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7.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법무과·국제법무과·국제분쟁대응과”를 “법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로, 국제분쟁대응과장 및”을 “검사로,”로, “국제법무과장·국가소송과장”을 “국가소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제7조의2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국제법무지원과·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 총괄 및 조정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 (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제3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국제사법 업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업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3. 대통령 ·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민사 · 상사 분야 국제법무 및 국제분쟁관련 법적 쟁점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인권국장”을 “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73”을 “7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6”을 “748”로 하며,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8”을 “9”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4”를 “28”로,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5”를 “2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7”을 “18”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기록연구사 “1”을 “3”으로, 검사 계 “29”를 “30”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9”를 “10”으로 하고, 보호서기 1 다음에 “시설서기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전산사무관 9 다음에 “기록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73”을 “7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6”을 “748”로 하며,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8”을 “9”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4”를 “28”로,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5”를 “2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7”을 “18”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기록연구사 “1”을 “3”으로 검사 계 “29”를 “30”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9”를 “10”으로 하고, 전산사무관 10 다음에 “기록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다음에 “시설서기·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54”를 각각 “466”으로 하고, 간호주사 “25”를 “33”으로 하며, 간호주사보 “58”을 “62”로 한다.

별표 13 제1호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호5) 및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5)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3명 (3·4급 1명, 5급 1명, 6 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6)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검사 1명, 5급 3 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법무실) ① ~ ④ (생략)	제5조(법무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무실에 <u>법무과·국제법무과·국제분쟁대응과·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통일법무과·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u> 를 둔다.	⑤----- <u>법무과</u> ----- ----- ----- ----- --.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u>검사로, 국제분쟁대응과장 및 상사법무과장</u> 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u>검사로, 국제법무과장·국가소송과장·행정소송과장·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u> 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u>검사로</u> 보한다.	⑥ ----- ----- <u>검사로,</u> ----- ----- ----- -- <u>국가소송과장</u>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국제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	

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
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
류에 관한 사항

6.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
(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7.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국
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
집·연구 및 간행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삭 제>

<u>사항</u> 2. <u>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u> <u>사항</u> 3. <u>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u> <u>원에 관한 사항</u> 4. <u>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u> <u>운영에 관한 사항</u> ⑩ · ⑪ (생략) ⑫ 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8. (생략) ⑬ · ⑭ (생략) 제7조의2(인권국) ① ~ ③ (생 략) ④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u>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u> <u>지원</u> 12. ~ 14. 삭제 15. (생략) ⑤ ~ ⑦ (생략) <u><신설></u>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u> <u>의 지원</u> 7. · 8. (현행과 같음) ⑬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인권국)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1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
--	---

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 · 국제법무지원과 ·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
(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
류에 관한 사항

6.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국
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
집·연구 및 간행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 총괄 및 조정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
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하
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
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
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국
제협약 관련 법률 자문 및 국
제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3
명)

3.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
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업무
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이행 업무를 담당하

----- 10퍼센트-----

--.

② -----

-----.

1. (현행과 같음)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국제사법 업무, 법률서비스 국
제경쟁력 강화 업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
명, 5급 1명)

3.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
정기관 등에 대한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및 국제분쟁
관련 법적 쟁점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
명, 5급 3명)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
명, 5급 3명)

는 1명(5급 1명)

5. ~ 16. (생략)

③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 ⑦ (생략)

⑧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5. ~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퍼센트-----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10퍼센트-----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⑨ (생략)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찰관, <u>인권국장</u>,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 및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을 말한다. ② (생략)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 <u>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u>--- -----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773	786	+13
일반직 계	.		736	748	+12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		8	9	+1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		24	28	+4
기록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		<신 설>	1	+1
	.		.	.	

•	•	•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u>25</u>	<u>26</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u>17</u>	<u>18</u>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2</u>	+1
•	•	•	
•	•	•	
기록연구사	<u>1</u>	<u>3</u>	+2
•	•	•	
•	•	•	
<u>시설서기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검사 계	<u>29</u>	<u>30</u>	+1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9</u>	<u>10</u>	+1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773</u>	• <u>786</u>	+13
일반직 계	• <u>736</u>	• <u>748</u>	+12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 <u>8</u>	• <u>9</u>	+1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 <u>24</u>	• <u>28</u>	+4
기록연구관 또는 <u>행정사무관</u>	• <u><신 설></u>	• <u>1</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u>25</u>	<u>26</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u>17</u>	<u>18</u>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2</u>	+1
•	•	•	
•	•	•	
기록연구사	<u>1</u>	<u>3</u>	+2
•	•	•	
•	•	•	
<u>시설서기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검사 계	<u>29</u>	<u>30</u>	+1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9</u>	<u>10</u>	+1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54</u>	• <u>466</u>	+12
일반직 계	<u>454</u>	<u>466</u>	+12
•	•	•	
•	•	•	
간호주사	<u>25</u>	<u>33</u>	+8
•	•	•	
•	•	•	
간호주사보	<u>58</u>	<u>62</u>	+4
•	•	•	
•	•	•	